



Public Safety
Canada

Sécurité publique
Canada



범죄 피해자
항상 알고 계십시오

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
1-866-525-0554 | publicsafety.gc.ca/nov

Canada

The information in this booklet is presented in Korean.
This publication is also available in other languages through
the National Office for Victims at 1-866-525-0554 or email
ps.nationalofficeforvictims-bureaunationalpourlesvictimes.sp@canada.ca.

Les renseignements contenus dans le présent livret sont
présentés en koréen. Il est également possible d'obtenir la
publication dans une autre langue auprès du 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 d'actes criminels au 1-866-525-0554 ou par courriel
à ps.nationalofficeforvictims-bureaunationalpourlesvictimes.sp@canada.ca.

© Her Majesty the Queen in Right of Canada, 2016

Cat. No.: PS4-69/2016Ko-PDF
ISBN: 978-0-660-04201-5

범죄 피해자 - 항상 알고 계십시오

캐나다법에 의거하여 연방 범죄자(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거나 캐나다 연방교정청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 / Service Correctionnel du Canada (SCC)] 또는 캐나다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 (PBC) / Commission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du Canada (CLCC)]의 관할 하에 있는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등록(registering/inscrip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에 따라 CSC 또는 PB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통과된 ‘캐나다 피해자권리장전 [Canadian Victim Bill of Rights (CVBR) / Charte canadienne des droits des victimes (CCDV)]’은 등록 피해자들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정보의 양과 유형을 늘렸습니다.

이 책자는 CVBR에 명시된 새로운 권리를 포함한 피해자가 알 권리가 있는 정보, 그 정보를 구하는 방법, CSC 및 PBC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연방 차원에서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나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해나, 재산상 또는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가한 사람이 귀하가 받은 피해에 대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경찰 또는 검찰 (Crown Attorney/procurleur de la Couronne)에 고소했을 경우도 포함
-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사실혼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 또는 피해자가 본인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없어서(피해자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할 능력이 없거나, 아동일 경우 등) 법 또는 양육권/보호권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보호 또는 부양을 맡고 있는 사람

-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본인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의 피부양자를 보호 또는 부양하는 사람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는가?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한 사람이 정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등록”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을 경우에는 CSC 또는 PBC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관 중 하나에 등록하면 두 기관 모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범죄자가 주정부 관할 하에 있을 경우
(즉, 범죄자가 2년 미만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정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사무소 또는 PBC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및 퀘벡 주의 경우 해당 주
가석방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연방정부의 피해자 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거나, 기타 일반 정보를
구하려면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
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 d'actes criminels)
1-866-525-0554 (무료전화)
publicsafety.gc.ca/nov

캐나다 연방교정청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Service Correctionnel du Canada)
1-866-806-2275 (무료전화)

csc-scc.gc.ca/victims-victimes

캐나다 가석방위원회 (Parole Board of Canada/
Commission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du Canada)
1-866-789-4636 (무료전화)
canada.ca/en/parole-board/index.html

CSC 또는 PBC로부터 지속적으로 적시에 통지를 받으려면,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피해자 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관할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 PBC, 또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온타리오 주 가석방위원회 (Ontario Parole Board/Commission ontarienne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1-888-579-2888**),

魁벡 주의 경우 퀘벡 주 가석방위원회 (Quebec Parole Board/Commission québécoise des libérations conditionnelles) (**1-866-909-8913**)

에 문의하십시오. 거주지 내 해당 지역 관할 주정부/지방정부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캐나다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Ministère de la Justice Canada) 산하 피해자문제정책센터 (Policy Centre

for Victims Issues/Centre de la politique concernant les victimes) 가 관리하는 전국 온라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 명부 [Victim Service Directory (VSD)/Répertoire national en ligne des services aux victimes (RSV)] 에서 찾아보십시오. VSD 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justice.gc.ca/eng/cj-jp/victims-victimes/vsd-rsv/index.html.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가?

CSC 또는 PBC 에 등록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범인의 성명
- 범인이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 및 범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
- 형기 및 형기 시작일
- 일시출감 또는 가석방에 대한 범인의 자격 및 심사일

또한, CSC 청장 또는 PBC 위원장이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한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피해자의 권리가 명백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나이
- 범인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의 이름 및 위치
- 범인이 다른 곳으로 이송될 경우, 최소 경비 교도소로의 이송에 대한 사전 통지를 (가능한 경우) 포함하여 이송 사유의 요약 및 범인이 복역하게 될 교도소의 이름과 위치
- 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Loi sur l'immigration et la protection des réfugiés*) 에 의거, 범인이 복역 만기 전 캐나다로부터 축출되는 경우 CSC에 의한 통지
- 범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
- 범인이 저지른 중징계 대상 범법 행위
- PBC 청문회 날짜
- 범인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지의 여부,

구금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이유

- 범인이 PBC의 결정에 항소를 했는지 여부와 항소의 결과
- 범인이 교정및조건부석방법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CCRA)/Loi sur le système correctionnel et la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 (LSCMLC)*] 140(1)에 의거한 청문회 참여 권한을 포기했을 경우 그 이유

PBC 위원장¹ 또는 CSC 청장²은 피해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이 임시출옥, 외부 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따라 석방되는 날짜가 정해졌을 경우 그 날짜
- 범인의 무호위 임시출옥, 외부 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부여된 모든 조건과 모든 임시출옥에 대한 이유

¹ PBC 위원장(또는 피위임자)이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한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피해자의 권리가 명백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² CSC 청장(또는 피위임자)이 이 정보의 공개가 일반 대중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임시출옥, 외부 통근,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따라 석방될 때 범인의 목적지와 범인이 그러한 목적지로의 이동 중에 피해자와 근접한 곳에 있게 될 것인지 여부

CSC 청장이 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가능하면 범인 석방 14 일 전에 제공됩니다. 또한 CSC 청장은 이 정보 중 변경이 생기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범인이 주정부 교도소로 이송되는 경우 피해자는 그 교도소가 위치한 주의 이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피해자는 범인에 관한 정보 요청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가석방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추가 정보

피해자 및 일반 대중은 PBC의 결정 등록부 (Decision Registry/Registre des décisions)에 등록되어 있는 PBC의 결정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조건부 석방, 범인의 재수감, 구금 등에 관한 결정의 이유, PBC 항소부 (Appeal Division/Section d'appel)의 결정 및 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PBC는 이 결정 문서에서 정보 출처 기밀을 노출하거나, 특정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범인이 준법 시민으로서 사회로 복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교정 및 가석방 절차에 발언권이 있습니다

CSC 및 PBC는 안전 문제 및 범인의 범행이 귀하와 귀하의 가족 및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에

관하여 귀하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든지
환영합니다. 피해자는 이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정보를 CSC 또는
PBC에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범인의 가석방 청문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을 요청하여 범인의 범행이 귀하에게 끼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영향(재산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PBC
위원들에게 낭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진술 비디오 녹화나 오디오 녹음을
제출하여 가석방 청문회에서 PBC 위원들에게
제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진술할
경우에는 문서화 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번역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청문회
30일 전,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45일 전까지
PBC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피해를 가한 범인의 PBC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캐나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피해자기금 (Victims
Fund/Fonds d'aide aux victimes)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CSC

또는 PBC에 등록해야 합니다. 피해자기금은 등록된 피해자를 동반하여 PBC 청문회에 참석하는 피해자의 지원자에게도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기금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의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attend-audience.html.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범인과 공유되는가?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 등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범인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SC 및 PBC는 법에 의거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요약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정보를 범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CSC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피해자가 선고 시 법원에 피해자영향진술서 (Victim Impact Statement/Déclaration sur les répercussions sur la victime)를 제출했을 경우, CSC는 범인 파일의 다른 법원 서류와 이를 접수합니다. CSC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진술서는 범인의 형기 중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습니다. CSC에 제공된 피해자 정보는 PBC와 공유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교도소 경비 수준의 결정
- 범인의 가석방 등 조건부 석방 허용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특별 석방조건 설정에 대하여 PBC에 건의
- 범인의 임시출옥 또는 외부 통근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
- 범인의 전반적 재범 위험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의 평가

PBC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귀하가 PBC에 제공하는 정보는 범행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한 피해에 대한 범인의 인식 여부를 평가하는 데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는 PBC가 다음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건부 석방으로 석방될 경우 범인의 재범 가능성
- 범인이 사회에 야기할 수 있는 특정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 조건이 필요한지의 여부(특히 범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곳에 거주하게 되거나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

CVBR의 개정 내용에 따라 PBC는 피해자 진술이 제공되는 경우 장기 감독 명령 (Long-Term Supervision Order/Ordonnance de surveillance de longue durée) 하에 있는 범인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피해자 안전 조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CCRA 는 무호위 임시출옥,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에 해당되는 범인에 대해 위원회가 피해자 안전 조건을 부과하도록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범죄자의 석방에 대한 대비는?

귀하에게 피해를 입힌 범인의 조건부 석방과 관련하여 안전이 우려될 경우, 범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귀하는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 CSC 또는 PBC 에 등록하여 범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십시오.
- 귀하가 우려하는 사항을 CSC 또는 PBC 에 알리십시오.
- 곧 있게 될 범인의 석방에 대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알리십시오.

- 지역사회의 지원을 구하십시오.
- 집과 공공장소에서의 신변 안전 대책 등, 특정한 필요와 상황에 근거하여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 경찰, 법원, 교정청/가석방위원회 등으로부터 범인에 관한 모든 서류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범인에게서 귀하가 원치 않은 연락이 올 경우 잘 기록해두십시오.
- 범인이 저지른 새로운 범죄 또는 범법 행위를 신고하십시오.
- 근신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연방 범죄자 석방에 대한 대비에 관해 알아보려면 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에 문의하십시오
(무료전화: 1-866-525-0554,
웹사이트: publicsafety.gc.ca/nov).

피해자를 위한 연방정부 서비스

캐나다 공공안전부: 연방피해자지원실

캐나다 공공안전부 (Public Safety Canada/Sécurité publique Canada) 의 연방피해자지원실 (National Office for Victims/Bureau national pour les victimes d'actes criminels) 은 연방 교도 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 지원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그 임무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및 미국 어디서든지 전화를 통해 캐나다 내에서 제공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전화 **1-866-525-0554** 운영
- 특정 문의의 경우 CSC 및 PBC 에 이첩
- 피해자,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자 및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물 개발
- 피해자, 피해자의 지지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정기적 협의

- 국가 정책 개발에 피해자의 견해 반영 보장
- 새로 나타나는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주요 연방 및 주 파트너들과 협력
- 교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CCRA 등의 연방 법률 개정을 포함,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책 개발의 선도 및 참여와 공공안전 및 비상대책부 장관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Ministre de la Sécurité publique et de la Protection civile)에 대한 조언 제공

자세한 내용은 연방피해자지원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publicsafety.gc.ca/nov.

캐나다 연방교정청: 피해자지원부

CSC 피해자지원부는 피해자 등록 업무와 더불어, 전담 지역 피해자지원서비스 매니저 및 피해자지원서비스 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CCRA)/Loi sur le système correctionnel et la mise en liberté sous condition (LSCMLC)] 제 26 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앞서 설명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지원부는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접수하며, 연방 정부의 교정 및 가석방 보호 관찰에 관한 피해자의 문의에 답변하고, CSC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피해자-범죄자 중재 서비스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지방 정부/주 정부/연방 정부/준주 정부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의 이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SC에 문의하십시오(무료 전화: **1-866-806-2275**, 웹사이트: csc-scc.gc.ca/victims-victimes).

캐나다 연방교정청: 회복적 사법부

CSC는 회복 기회 [Restorative Opportunities (RO)/possibilités de justice réparatrice (PJR)]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범죄자 중재 [victim-offender mediation (VOM)/médiation entre la victime et le délinquant (MV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범죄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된 중재자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해한 범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RO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말할 기회를 갖고, 질문을 하며,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어떤 문제에 대한 종결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OM은 참가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진행되며, 서신, 비디오 메시지 및/또는 직접 면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O 프로그램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SC의 회복적사법부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613-947-7309**,
이메일: **restorativejustice@csc-scc.gc.ca**,
웹사이트: **csc-scc.gc.ca/text/rj/index-eng.shtml**).

캐나다 가석방위원회: 지역홍보관

PBC는 각 지역에 지역홍보관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rs (RCOs)/Agents régionaux de communications (ARC)] 팀을 두고 등록된 피해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등록하고 가석방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관해 피해자에게 정보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역홍보관은 또한 등록된 피해자와 석방 결정을 공유하고(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를 다른 서비스 및 자원과 연계해주며, PBC 청문회에 제출할 피해자 진술서의 작성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함께 PBC 청문회에 참석하여 청문회 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답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BC에 문의하십시오(무료전화: 1-866-789-4636, 웹사이트: canada.ca/en/parole-board/index.html).

캐나다 법무부: 피해자문제정책센터

캐나다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ministère de la Justice Canada) 피해자문제정책센터
[Policy Centre for Victims Issues (PCVI)/Centre de la
politique concernant les victimes (CPV)] 는 범죄
피해자에 관한 연방 정책 개발을 주관하며,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자신들의 역할 및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및 지원을 이해하도록
지원
 - 관련 연방 법률이나 정책이 개발될 때
피해자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
 - 범죄 피해자의 요구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캐나다 및 국제적 인식 제고
- PVCI의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연방 법률 및 활동에서 “**피해자의 눈**” 역할 수행
- 법률 개혁, 최적 관행 및 긴급 이슈의 영향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 캐나다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늘리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며,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제한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금인 **피해자기금의 집행**
- 형사사법제도 및 관련 법률에서의 피해자의 역할에 대한 **공공 법률 교육 및 정보 제공**
- 범죄 피해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함께 가지는 **다른 연방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력**
-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자세한 내용은 PCVI에 **1-866-544-1007** (무료전화)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justice.gc.ca/eng/cj-jp/victims-victimes/index.html).

범죄 피해자를 위한 연방 옴부즈맨

범죄 피해자지원 연방옴부즈맨실 [Office of the Federal Ombudsman for Victims of Crime (OFOVC)/ Bureau de l'ombudsman fédéral des victimes d'actes criminels (BOFVAC)] 은 연방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독립적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OFOVC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돋습니다.

- 피해자를 돋기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
- 연방정부 부처, 기관, 공무원, 법률 또는 정책에 관한 피해자의 불만 대응
-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 내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소개
-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규명

- 범죄 피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에 관해 연방정부에 건의
자세한 내용은 OFOVC에 문의하십시오
(웹사이트: www.victimsfirst.gc.ca, 이메일:
victimsfirst@ombudsman.gc.ca,
전화: 613-954-1651, 1-866-481-8429(무료전화)
또는 1-877-644-8385 (TTY),
팩스: 613-941-3498).

연방 정부가 피해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로 무시한다고 믿는 경우 어떻게 항의하는가?

CVBR은 범죄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 연방 부처 및 기관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불만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CVBR에 따른 귀하의 권리가 CSC, PBC, 연방경찰 (RCMP), 국경관리국 (CBSA), 공공안전부 (PS) 또는 법무부 (JUS)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믿거나, 연방 검사 또는 캐나다 연방검찰 (PPSC)의 서비스, 절차, 관행 또는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귀하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은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위해 귀하의 불만을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CVBR에 따라 CSC, PBC, RCMP, PS, JUS 또는 PPSC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락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justice.gc.ca/eng/cj-jp/victims-victimes/rights-droits/complaint-plainte.html. CVBR에 따라 CBSA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CBSA의 칭찬·제안·불만 (Compliments, Comments and Complaints)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bsa-asfc.gc.ca/contact/com-eng.html.